

1차시

I. 무역의 개요

1. 무역의 개념 :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

2. 무역의 대상

- (1) 물품 : 일반적으로 유형의 상품(goods)을 대상으로 함
- (2) 용역 :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함
- (3) 기술·권리 : 산업재산권이나 know-how를 의미함(저작권, 특허권 등)
- (4) 자본 및 노동 : 국가 간에 이동하는 자본이나 노동을 의미함

3. 무역 계약의 법적 성격

(1)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 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 요물계약(Substantial Contract)**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일정한 법률사실(물품의 인도, 소유권의 이전)이 존재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

(2)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계약

*** 편무계약(Unilateral Contract)**

당사자 일방에게만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

(3)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 계약 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의 급부가 있는 계약

*** 무상계약(Unremunerative Con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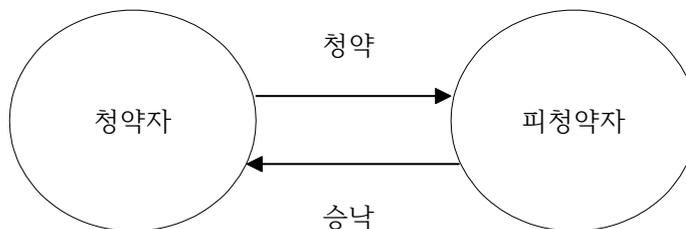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약

(4)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 특정한 요식에 의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 등으로 성립되는 계약

*** 요식계약(Formal contract)**

서면 등의 특정양식에 의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명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II. 무역 계약



1. 청약(Offer)

- (1) 개념 :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시
- (2) 요건
 - ①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안일 것

- ② 승낙이 있으면 구속된다는 의사를 나타낼 것
- ③ 청약의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일 것
- ④ 1인 이상의 특정인에게 제시될 것
- (3) 효력 발생 :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효력 발생
- (4) 청약의 유인 : 상대방을 유인하여 자신에게 청약을 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승낙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음

2. 승낙(Acceptance)

- (1) 개념 : 청약을 수락한다는 피청약자의 의사표시
- (2) 요건
 - ① 청약의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하여야 함
 - ② 약정된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함
 - ③ 상대방에게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것
 - ④ 피청약자(당사자)가 승낙하여야 함
- (3) 방법 : 당사자 간에 정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따르고, 정해진 방법이 없다면 구두, 서면, 행위 모두 가능함

*** 승낙의 불인정**
 당사자 간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침묵(silence)이나 부작위(omission)는 승낙으로 인정되지 못함

- (4) 효력 발생 :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효력 발생

***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

- ① :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계약 성립
- ② 도달주의 :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계약 성립
- ③ 요지주의 : 물리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고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았을 때 계약 성립

2차시

3.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1) 의의 : 무역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약정하는 거래조건
- (2) 품질조건(Quality Terms) : 계약물품의 품질 결정방법, 결정시기 등을 정하는 조건
- (3) 수량조건(Quantity Terms) : 계약물품 수량의 단위, 결정시기 등을 정하는 조건
- (4) 가격조건(Price Terms) : 계약물품의 가격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 조건
- (5) 포장조건(Packing Terms) : 계약물품 포장의 형태, 단위 등을 정하는 조건
- (6) 결제조건(Payment Terms) : 계약물품 대금의 지급시기, 방식 등을 정하는 조건
- (7) 선적조건(Shipment Terms) : 계약물품의 인도시기, 장소 등을 정하는 조건
- (8) 보험조건(Insurance Terms) : 계약물품의 보험금액, 조건 등을 정하는 조건
- (9) 분쟁해결조건(Dispute Settlement Terms) :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방안을 정하는 조건

Ⅲ. 무역법규

* 무역관리 3대 법규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통관절차 및 관세의 부과·징수 규정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위해 제정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

i. 관세법

1. 대상 : 유체물
2. 수출입 거래
 - (1) 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2) 수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사용하는 것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 관세 외에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세 등이 부과됨

예 자동차 수입신고 시 부과되는 세금

① 관세 ② 개별소비세 ③ 교육세 ④ 부가세

4. 관세율표

- (1) 의의 : 상품분류를 위해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코드(HS Code)
- (2) 국제적으로 6단위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며, 우리나라는 10단위로 운용함

(3) HS Code의 구성

예 0101.30-9000(살아있는 번식용 당나귀)
류(01류)
호(0101호)
소호(0101.30호)

3차시

5. 관세의 계산

- (1) 과세요건 :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과세대상 : 수입물품(유체물)
 - ② 납세의무자 : 수입 화주(운송서류상 물품수신인 등)
 - ③ 과세표준 : 수입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
 - ④ 세율 : 관세율
- (2) 과세물건 확정시기 : 수입신고 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
- (3) 적용법령 : 수입신고 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
- (4) 관세평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

6. 납세의무의 완화제도

- (1) 관세 감면 :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의무를 경감·면제하는 제도
- ① 무조건 감면 : 특정한 사실에 해당되면 감면하는 제도
 - ② 조건부 감면 : 특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감면하는 제도
- (2) 용도세율 : 용도별로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 중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
- (3) 분할납부 : 관세를 일정 기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
- (4) 납부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정해진 납부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

7. 보세제도

- (1) 보세구역 : 보세화물을 장치·가공·전시·판매 등을 하는 장소

구분	지정권자	지정대상	종류
지정	세관장	국가·지자체·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등에서 지정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특허	세관장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토지·건물 등에서 특허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종합	관세청장	특정 지역 중에서 지정	종합보세구역

- (2) 보세운송 : 보세화물을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

8. 가산세·과태료·과징금

- (1) 가산세 : 관세법상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액
- (2) 과태료 :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액
- (3)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취소나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금액

ii. 대외무역법

1. 대상

- ① 유체물(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제외), ② 용역, ③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2. 무역거래의 범위

(1) 수출의 범위

- ① 유체물
- ㉠ 국내 -> 외국(우리나라의 선박이 외국에서 채집·포획한 광물 등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 포함)

㉡ 보세판매장(면세점) -> 외국인에게 판매

㉢ 외국 -> 외국(유상거래)

② 용역 : 거주자 -> 비거주자

③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거주자 -> 비거주자

(2) 수입의 범위

① 유체물

㉠ 외국 -> 국내

㉡ 외국 -> 외국(유상거래)

② 용역 : 비거주자 -> 거주자

③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비거주자 -> 거주자

3.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1) 수출입공고 : 수출입 금지품목 및 수출입 제한품목에 대하여 규정

(2) 통합공고 : 개별 법령에 따라 수출입 요건을 갖추어야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을 규정

(3) 상호 관계 :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독립적으로 운영됨

4. 전략물자

(1) 개념 :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기술

(2) 사전판정 : 물품 등의 무역거래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음

(3) 수출허가 :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수출입 실적

(1) 개념 : 수출입통관액 등

(2) 인정범위 :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입

(3) 인정금액 : FOB 가격(수출), CIF 가격(수입) 등

iii. 외국환거래법

1. 대상

- ①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거래 등
- ②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등
- ③ 비거주자 거래(대한민국 통화)
- ④ 거주자 거래(외국)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거주자

-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
- ②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등
- ③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2)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

3. 외국환의 지급·수령방법에 대한 신고

(1) 원칙 : 신고를 요하지 않음

(2) 예외 : 거주자가 신고

- ① 상계 및 상호계산에 의한 결제
- ② 수출입 대금의 법정기간을 넘기는 결제
- ③ 외국환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지급 또는 수령
- ④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4. 자본거래 신고

(1) 원칙 : 신고 또는 신고수리

(2) 예외 : 허가

4차시

iv. FTA 관세특례법

1. 의의 : 양자 간 무역협정

2. 협정관세 적용신청

(1) 원칙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신청

(2) 예외

④ 일반적인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②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추징 시 : 45일 이내 신청

3.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

(1) 기관발급 :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아세안,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

(2) 자율발급 : 수출자 등이 발급(EFTA, EU, 미국 등)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3) 충분가공원칙

(4) 직접운송원칙

5. 원산지 표시제도

(1) 의의 :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등을 수출입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2) 표시방법 : 언어(한글, 한자, 영문)



[그림 변경 24.1.12 기준]

v. 환급특례법

1. 의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법

2. 환급특례법상 환급제도
 - (1) 개별환급
 - ① 적용 대상 : 모든 수출기업
 - ② 대상 품목 : 모든 수출품목
 - ③ 제출 서류 : 소요량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 수출신고필증
 - ④ 환급 방법 :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을 산출하여 환급
 - (2) 간이정액환급
 - ① 적용 대상 :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② 대상 품목 :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른 수출품목
 - ③ 제출 서류 : 수출신고필증
 - ④ 환급 방법 : 수출금액(FOB) 1만원당 일정 금액 환급

IV. CISG

1. 의의 : 물품의 국제적 매매를 규율하는 통일적 국제조약(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2. 구성
 - (1) 계약의 성립
 -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3) 위험의 이전
 - (4) 손해배상
 - (5) 물품의 보관

3. CISG의 특성
 - (1) 포괄적인 법체계
 - (2) 국제매매에 한정 적용
 - (3) 사적자치의 원칙
 - (4) 당사자 불문
 - (5) 소유권 이전 규정의 부재
 - (6) 소유권과 위험부담의 분리
 - (7) 계약유지의 원칙
 - (8) 고의·과실 여부 불문

V. Incoterms 2020

1. 의의 : ICC에서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내·국제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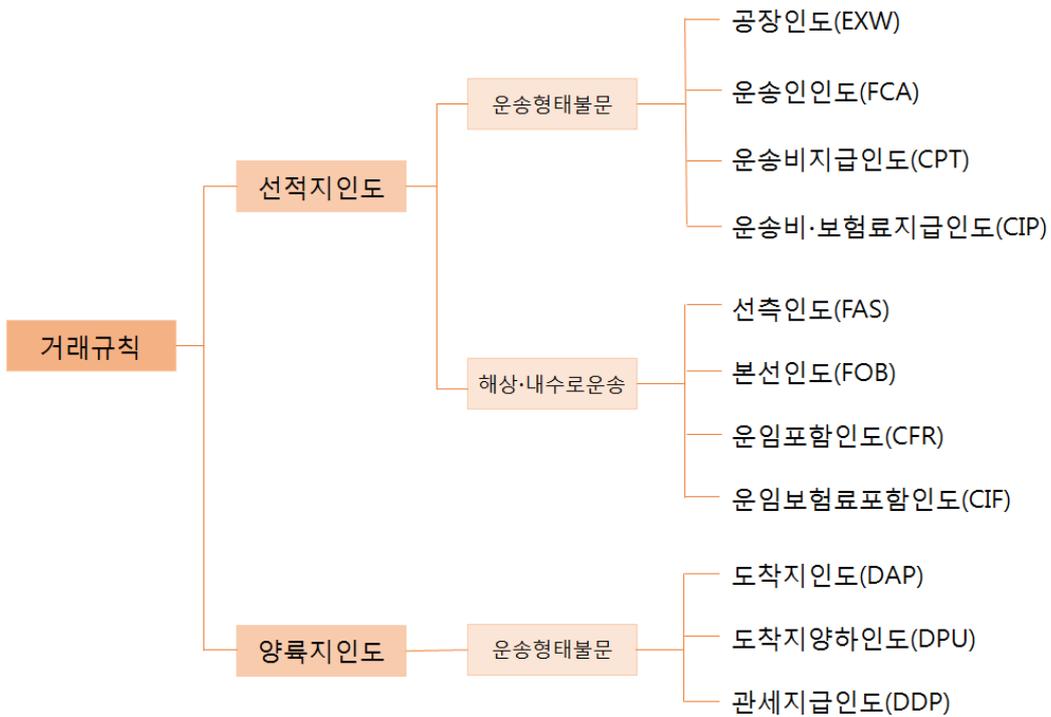
2. 구성(총 11가지 규칙)

(1)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7가지)

(EXW, FCA, CPT, CIP, DAP, DPU, DDP)

(2)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방식에만 사용 가능한 규칙(4가지)

(FAS, FOB, CFR, CIF)



3. Incoterms 2020의 특징

- (1) 국내 및 국제거래에 적용 : 국제 간 무역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용 가능
- (2) 합의에 의한 적용 :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적용되며, 적용할 때에는 관련 서류에 명확하게 'Incoterms 2020'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3) 당사자 의무 규정 : 11가지 규칙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

수출자/수입자 의무	Incoterms® 2020
A1/B1	일반 의무
A2/B2	인도/인도의 수령
A3/B3	위험 이전
A4/B4	운송
A5/B5	보험
A6/B6	인도/운송서류
A7/B7	수출/수입통관
A8/B8	점검/포장/하인 표시
A9/B9	비용 분담
A10/B10	통지

- (4) 소유권 이전 규정 부재 :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지 않음
- (5) Incoterms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
 - ① 매매계약의 존부
 - ② 매매물품의 성상
 - ③ 대금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 또는 통화
 - ④ 매매계약 위반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
 - ⑤ 계약상 의무이행의 지체 및 그 밖의 위반의 효과
 - ⑥ 제재의 효력
 - ⑦ 관세부과
 - ⑧ 수출 또는 수입의금지
 - ⑨ 불가항력 또는 이행가혹
 - ⑩ 지식재산권 또는
 - ⑪ 의무위반의 경우 분쟁해결의 방법, 장소 또는 준거법
 - ⑫ 매매물품의 소유권/물권의 이전

VI. 대금의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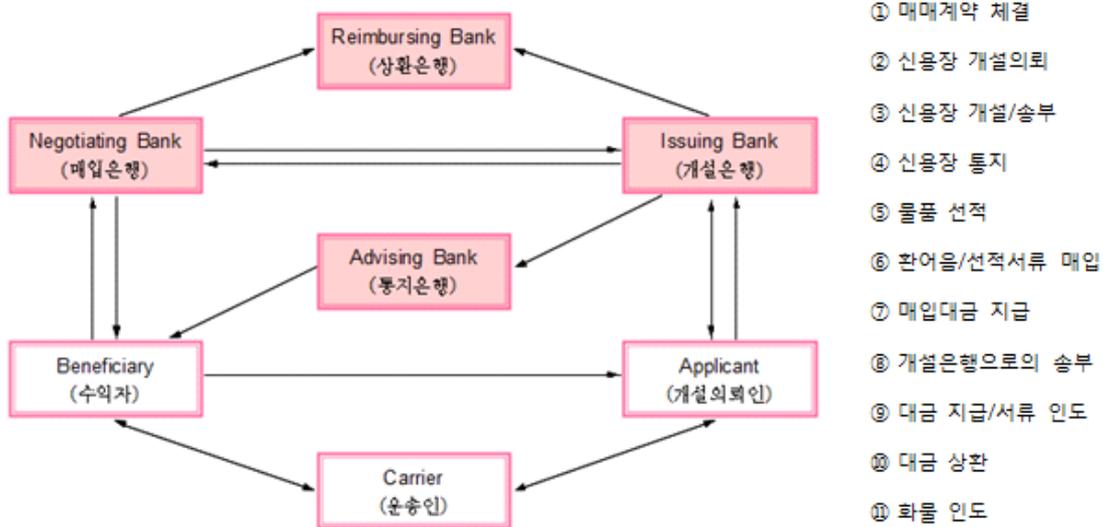
1. 의의 : 대금 결제 방법으로서 화한신용장, 추심 결제, 송금 결제 등의 방법이 있음

2. 신용장 방식

(1) 의의 :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다고 판명된 경우 무조건적으로 대금을 결제해주는 방식

(2) 당사자

- ① 개설은행(Issuing Bank) :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
- ②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추가로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은행
- ③ 수익자(Beneficiary) : 개설된 신용장에 따라 대금 지급을 받는 자(수출자)
- ④ 개설의뢰인(Applicant) :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자(수입자)



3. 송금 결제방식

(1) 의의 : 수출자가 물품을 인도하기 전이나 인도한 후에 수입자가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

(2) 종류

- ① 사전송금 방식 : 수입자가 물품이나 서류를 수령하기 전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
- ㉠ 송금환수표(D/D : Demand Draft)
- ㉡ 우편송금환(M/T : Mail Transfer)
- ㉢ 전신송금환(T/T : Telegraphic Transfer)
- ② 사후송금 방식 : 수입자가 물품이나 서류를 수령한 후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
- ㉣ 현물상환도 방식(COD : Cash On Delivery)
- ㉤ 서류상환도 방식(CAD : Cash Against Document)

4. 추심 결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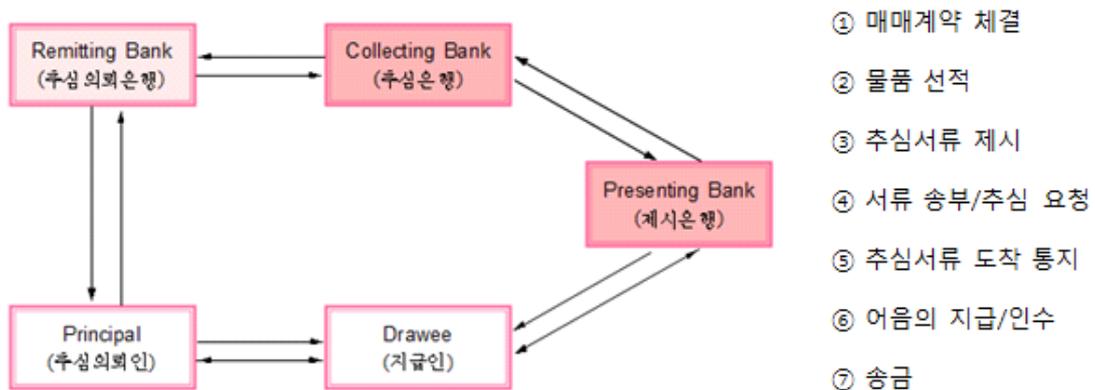
(1) 의의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에 화환어음을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가 그 어음에 대해 지급하거나 인수하여 결제하는 방식

(2) 당사자

- ① 추심의뢰인(Principal) :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자(수출자)
- ②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
- ③ 추심은행(Collecting Bank) : 추심의뢰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 ④ 제시은행(Presenting Bank) : 지급인에게 추심서류를 제시하는 은행
- ⑤ 지급인(Drawee) : 서류를 받고 대금을 결제하는 자(수입자)

(3) 종류

- ① 지급인도 조건(D/P : Documents against Payment)
- ② 인수인도 조건(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Ⅶ. 국제운송

1. 의의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과정으로서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해상운송 :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하여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운송

(1) 정기선 운송(개품운송계약)

① 의의 : 특정항로를 규칙적으로 왕복 운송하는 것

② 절차 : 선복신청(S/R)->선적지시(S/R)->선적->본선수취증(M/R) 발급->선하증권(B/L) 발급->적재화물목록(M/F) 작성->도착통지(A/R)->화물인도지시서(D/O) 발급->인수

③ 선하증권 :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선사가 개설하는 운송서류



(2) 부정기선 운송(용선계약)

① 의의 : 송하인이 선사나 선주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것

② 용선계약의 종류

㉠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 선주로부터 선복량의 일부만을 빌려 쓰는 계약

㉡ 전부용선계약(Whole Charter) : 용선자가 선박 또는 선복 전체를 빌려 쓰는 계약

- 기간용선계약
용선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선박을 빌리기로 선주와 체결하는 계약
- 나용선계약
선주가 선박 자체만을 일정 기간 용선자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인 용선자가 선장 등의 임명과 해임, 지휘, 감독을 담당함으로써 선박을 점유하는 계약
- 항해용선계약
특정 항해구간을 정하여 선박을 대여 또는 차용하는 계약

③ 정박기간(Laydays) : 화주가 계약화물을 용선한 선박에 적재 또는 양륙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 있게 할 수 있는 기간

㉠ 체선료(Demurrage) : 초과된 정박기간에 대해 화주가 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 조출료(Dispatch Money) : 정박기일 이전에 작업이 완료된 경우 선주가 화주에게 지급하는 금액

8차시

(3)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 ① CY/CY 운송(FCL/FCL) : 하나의 송하인, 하나의 수하인
- ② CY/CFS 운송(FCL/LCL) : 하나의 송하인, 둘 이상의 수하인
- ③ CFS/CY 운송(LCL/FCL) : 둘 이상의 송하인, 하나의 수하인
- ④ CFS/CFS 운송(LCL/LCL) : 둘 이상의 송하인, 둘 이상의 수하인

(4)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① 의의 :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
- ② 기능
 - ㉠ 운송계약의 체결 증거 : 선박회사와 화주 간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
 - ㉡ 화물수취 증거 :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물품을 적절하게 수취했다는 증거
 - ㉢ 권리증권 : 물품에 대한 소유나 지배의 증거로서 증권의 양도로 인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 증서

3. 복합운송

- (1) 의의 : 2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운송

(2) 복합운송인

- ① 의의 : 화주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주체로서 운송을 이행하는 자

② 유형

- ㉠ 실제운송인 : 운송수단을 보유하여 실제로 운송을 이행하는 자
- ㉡ 계약운송인 : 운송수단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별도의 운송계약을 통하여 복합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

③ 복합운송 주선업자의 역할

- (㉠ 운송 수배, ㉡ 운송 관련 서류 작성, ㉢ 통관 대행, ㉣ 포장 및 창고 보관, ㉤ 소량화물의 혼재, ㉥ 화주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4. 항공운송

- (1) 의의 : 항공기를 운송수단으로 하여 항공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운송

(2) 운송서류 : 항공화물운송장(AWB)이 개설됨

(3) 항공화물운송장

- ① 원본 3장과 부분 6장으로 발급

- ㉠ 첫 번째 원본 : 항공사용(녹색)

- ㉡ 두 번째 원본 : 수하인용(적색)

- ㉢ 세 번째 원본 : 송하인용(청색)

- ② 기명식으로 발급

- ③ 유통성 없음

- ④ 권리증권성 없음

- ⑤ 수취식으로 발급

Ⅷ. 국제보험

1. 해상보험

(1) 의의 : 해상위험에 의해 야기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손해보험

(2) 해상보험계약

① 당사자

㉠ 보험자(Insurer) :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자

㉡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피보험자(Insured) :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

②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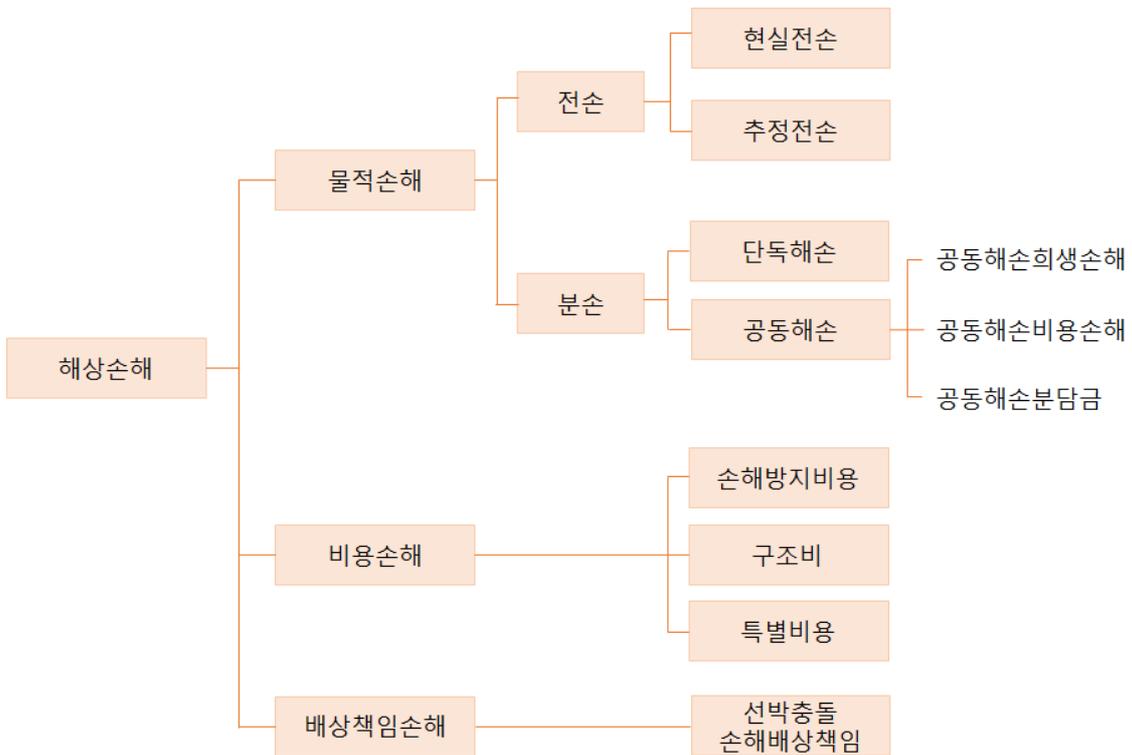
㉣ 보험가액(Insurable Value) : 경제적 손해의 최고한도액

㉤ 보험금액(Insured Amount) :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

2. 해상손해

(1) 의의 : 해상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는 재산상의 불이익

(2) 해상손해의 종류



3. 협회적하약관

(1) 의의 : 국제 운송에서 사용되는 보험약관

(2) 구 협회적하약관 : 1912년 채택된 적하약관

담보조건	내용
전위험 담보 (A/R)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
분손 담보 (W/A)	전손, 분손을 담보하는 조건
단독해손 부담보 (FPA)	단독해손 외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

(3) 신 협회적하약관 : 1982년 채택되고 2009년에 개정된 적하약관

약관 조항	담보위험	A	B	C	비고
제1조	1. 화재·폭발	○	○	○	좌기의 사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멸실, 손상
	2. 선박·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	○	○	
	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	○	○	
	4. 선박·부선·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접촉	○	○	○	
	5. 조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화	○	○	○	
	6. 지진, 분화, 낙뢰	○	○	X	
	7. 공동해손의 희생	○	○	○	좌기의 사유로 인한 멸실, 손상
	8. 투하	○	○	○	
	9. 갑판유실	○	○	X	
	10. 해수·조수·하천수의 운송용구, 컨테이너, 보관장소에의 침수	○	○	X	
	11. 적재, 양하 중의 낙하에 의한 포장당 1개의 전손	○	○	X	
	12. 상기 이외의 일체의 위험	○	X	X	
제2조	공동해손조항	○	○	○	
제3조	쌍방과실충돌조항	○	○	○	

○ : 담보위험, X : 면책위험

약관 조항	면책위험	A	B	C
제4조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X	X	X
	2. 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감소, 자연감소	X	X	X
	3. 포장 또는 포장 준비의 불완전, 부적합	X	X	X
	4. 물품 고유의 하자, 성질	X	X	X
	5. 지연	X	X	X
	6. 선박소유자·관리자·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 불이행	X	X	X
	7. 어떤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또는 파괴	○	X	X
	8. 원자핵무기에 의한 손해	X	X	X
제5조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인지하는 선박의 감항성 결여, 부적합	X	X	X
제6조	전쟁위험	X	X	X
제7조	동맹파업	X	X	X

○ : 담보위험, X : 면책위험

IX. 클레임과 분쟁 해결방법

1. 클레임의 의미 :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매매계약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기하는 금전적 손해배상 등

2. 계약 위반의 유형

- (1) 이행 지연 : 이행 기일을 넘겨 이행을 하는 경우
- (2) 불완전 이행 : 이행 기일 내에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계약 내용과 불일치한 경우
- (3) 이행 불능 :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 (4) 이행 거절 : 이행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3. 분쟁 해결방법

(1) 당사자 간 해결

- ① 청구권 포기
- ② 타협과 화해

(2)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 ① 알선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한 제3자가 사건에 개입하고, 당사자가 그 조언에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② 조정 : 양 당사자가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③ 중재 : 양 당사자가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④ 소송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